

2010.06.14 미래정책연구실

※ 지난 6월 7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「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」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임.

□ 개요

-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·농촌, 수산·어촌, 식품, 산림의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
 - 농업·농촌 : 50개, 수산·어촌 : 12개, 식품관련 : 17개, 산림관련 : 21개

< 주요 내용 >

- ① 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의 소유제한 폐지(약 15만ha로 추정)
- ②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견본거래 기준(보관·저장시설 도매시장 내 위치 등)완화
- ③ 미역·다시마 양식어장 시설비율 대폭 확대(5~10%→15~20%)
- ④ 버섯재배 원료 수입 시 신고절차 간소화
- ⑤ 식육가공품 판매장에서 돼지 뒷다리 분할판매 허용
- ⑥ 된장,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 품질검사 주기 완화(매월 1회→6개월 1회)
- ⑦ 최대 산림벌채 면적 상향(30→50ha), 농림어업인 설치 시설에 대한 산지 전용 수수료 면제

□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

1. 농업·농촌 분야

○ 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(경작곤란 농지)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

- 경작이 어려운 농지(영농여건불리지역)의 경우 소유제한을 폐지하고,

농지전용절차도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

- 영농여건불리지역의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케하여 특용작물 등의 재배지로 활용하게 하고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열악한 농지의 거래도 활성화할 것임.
- 대상지역은 전체농지 174만ha 중 8%인 15만ha로 추정

○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견본거래(見本去來) 제약기준 완화

- 보관·저장시설의 위치제한 폐지 및 보관·저온저장시설 면적기준을 완화하고, 도매시장 사용료도 인하
- 면적기준: 330㎡→165㎡, 사용료: 거래액의 0.5%→0.3%
- 견본거래 활성화로 교통혼잡 완화 및 유통·물류비용 등 연간 140억 원 절감 예상(연간 5% 견본거래 시).

○ 버섯재배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한 규제개선

- 버섯재배 원료 수입 시 재활용 신고 면제, 폐기물 수집·운반 차량 이용 의무 면제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
- 양송이 재배용 복토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
- 팽이와 양송이버섯의 표준등급규격 기준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

○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확대 실시

-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확대
- 현재 150개소에서 '12년까지 시·군별로 2~3개씩 늘려 총 220개소로 확대
- 자가소유가 아닌 농기계 임대이용시 비용절감 효과 : (과수) 54%, (콩·마늘) 77%

○ 농약 상시등록체계 도입

- 농약 등록신청 서류를 전자화 문서로 제출받고 처리하는 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상시접수·처리 체계로 전환
- 조기 등록으로 제품의 판매시기가 앞당겨져 40억 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

○ 농어업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현실화

- 감골 복구비 기준단가 현실화 및 키워(참다래) 품목 추가
- 감골 1ha당 2,940천 원 → 4,410천 원(50% 인상 시)
- 감골재배 농어민 지원효과는 3,675백만 원, 키워재배 농어민 지원효과는 490백만 원으로 추산

2. 수산·어촌 분야

○ 어선검사 시 어선 선미 연장증설 부분(물받이) 허용범위 마련

- 어선 공간 확대를 위한 선미부, 상부 구조물의 증설 부분에 대해 어선 검사 인정 허용범위를 설정
- 어선검사에 따른 증설부분 철거 및 재설치 비용 절감액은 189억 원 (6,300척×300만 원)으로 추정됨.

○ 2톤 이상 어선 4만 8,021척의 기관변경시(엔진) 개조허가를 면제

○ 제주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 확대

-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주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를 100톤까지 확대
- 현재 제주 연안들망어업 어획 멸치는 젓갈용으로 처리되나 부속선 규모 확대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마른멸치 생산으로 최소 30~50억 원 어업 소득 증대가 예상

○ 미역과 다시마의 복합양식어장 시설비율 확대

-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15~20%까지 확대
- 미역, 다시마 생산량은 '09년 615천 톤에서 677천 톤으로 10% 증가가 예상되며, 소득은 50억 원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○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품종 완화

- 멍게, 피조개, 홍합의 신규어장 개발 허용
- 멍게, 피조개, 홍합 생산량은 '09년 63,957톤에서 70,353톤으로 10% 증가가 예상되며, 소득은 4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

3. 식품 분야

○ 식육가공품 판매장에서 돼지 뒷다리 분할판매 허용

- 돼지 뒷다리를 판매장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
- 제도 도입 시 가공공장 20~30개의 설립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약 4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
- 특히, 돼지 뒷다리 소비 촉진으로 삼겹살 위주의 돼지고기 불균형 소비를 해소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축산농가 수익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

○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면위탁생산 허용

- 민간연구소 등의 건강기능식품 연구 활성화로 식품산업으로 육성이 가능

○ 된장,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

- 현행 1월마다 1회 이상에서 6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개선
- 연간 검사비용절감 : 76,800원×10회(12회-2회)×434업체=333백만 원

○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확대 및 주류표시제 도입

- 100㎡ 이하 음식점에도 쌀·김치류 등의 원산지표시를 확대하고, 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실시

4. 산림 분야

○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대상 축소

- 양안 5km 이내에 분수령(分水嶺)이 있는 경우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제외
-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인 15만ha 중 10%(15천ha) 이상이 제외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
○ 산림의 벌채기준 합리화

- 산림 벌채시 최대 벌채면적을 30ha에서 50ha로 늘리고, 수림대 존치의무 대신 ha당 일정본수(50본) 이상 남기는 것으로 변경

- 5ha 이상 산주(185천명)에 대하여 별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산주는 효율적인 별채로 소득향상 및 산업용재 공급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**농림어업인 등에 산지전용 수수료 면제**

- 농림어업인,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주택, 농기계창고, 집하장 등의 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수수료를 면제

※ 분야별 100개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ifaff.go.kr>)에서 '농산어촌 현장 애로 해소'에 대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